

2025년도 방사광가속기 구축대응

- 가속기장치 선도기술개발 지원사업 2차 공고 -

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적기 구축 및 지역 내 가속기산업 생태계 조성과 핵심 원천기술의 확보 및 기술개발을 도모하고자 '가속기장치 선도기술개발 지원사업'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지역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5년 5월
충청북도지사

1. 사업개요

- (사업목적) 가속기장치 원천기술 확보, 소재·부품·장비의 국산화 및 기술고도화를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방사광가속기 성공구축 견인
- (사업내용) 가속기장치 관련 원천기술 개발 및 상용화 R&D 지원

< 25년도 재공고 개요 >

구 분	세부내용	구 분	세부내용
프로그램	선도기술개발 지원사업	추진체계	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
지원규모	1.5억원(도비)	협약방식	일괄협약
지원기간	10개월(단기·고도화 과제)	기술료	영리기관 기술료 징수(정액)
지원한도	1.5억원 이내(단기·고도화 과제)	공고기간	'25. 5. 21. ~ 6. 17.
출연비중	사업비의 80% 이내	평가·선정	'25. 7월 초

2. 지원 상세내용

□ 사업예산 : 1.5억원 (도비)

□ 지원내용

- (사업내용) 가속기장치 지역기업의 원천기술 개발 및 상용화 기술 개발 과제 지원
- (추진체계) 지역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
 - 주관연구개발기관 :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 수행 총괄
 - 공동연구개발기관 : 주관기관의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공동개발 지원
- (공모분야) 가속기장치 분야 신기술개발, 기존제품의 고도화 등 자유공모
 - ※ 고도화 과제는 이전 과제를 수행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기개발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
- (지원규모 및 기간)
 - 총 1개 과제

구 분	지원예산	지원기간
단기 또는 고도화	1.5억원 이내	총 10개월 ('25. 07. 01. ~ '26. 04. 30.)

※ 지원예산 및 기간은 과제선정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□ 신청자격

- (주관연구개발기관) 부가가치세법 제6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접수일 현재 충북 지역에 사업장, 공장, 연구소 중 1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
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,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 제1호 등

지원제외 대상

- ▷ 신청기업, 참여기관,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있는 경우
- ▷ 신청기업, 참여기관, 연구책임자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/정산금/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- ▷ 신청기업, 참여기관, 연구책임자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① 부도 또는 휴·폐업
 - ②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- ③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단,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(보증)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)
 - ④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 - ⑤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경우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"BBB"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함)
 -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 경우(단,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)
 -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인 경우

- (공동연구개발기관) 충북 또는 타 지역에 소재한 대학, 연구기관, TP, 지역특화센터, 지역혁신센터, 지자체연구소 등

공동연구개발기관 자격

- ▷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다음의 기관
 - ①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
 - ②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 - ③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
 - ④ 「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
 - ⑤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 - ⑥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
 - ⑦ 「민법」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
 - ⑧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기관·단체·기업
- ▷ 「민법」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
- ▷ 그 밖에 충청북도 및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기관·단체 또는 기업

□ 평가기준

평가항목	세부 항목	평가지표
기술성 (40%)	기술개발 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? 개발 내용이 기존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, 우수한가? 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?
	사업목표 및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측정 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? 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지? 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 가능한가? 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,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?
사업성 (40%)	사업화 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, 향후 시장을 분석·예측하는 등 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? 개발결과의 실용화·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?
	매출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매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,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? 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,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? 신규시장 창출, 수입 대체효과 등이 기대되는가?
경영능력 (20%)	추진체계 및 연구자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관 구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가? 수행기관별 담당 기술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? 총괄책임자, 참여연구원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?
	사전준비 및 연구능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? 최근 R&D 실적이 우수하고,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? 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?
	예산편성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?

※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3. 사업비 부담비율

□ 민간부담금 비율

구분	지자체 지원금	민간부담금	비고
주관연구개발기관	연구개발비의 80% 이하	연구개발비의 20% 이상 (현금 또는 현물 계상 가능)	

※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 분의 부담금까지 부담 가능

4. 기술료 징수

-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“혁신성과”, “보통”, “성실수행” 인 과제의 연구개발기관(영리기관에 한함)은 성과물에 대한 실시 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 납부
- 기술료 징수방식 : 정액기술료
 - 세부사항은 「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」에 따라 징수

납부의무기관	징수금액	납부시기	비고
주관연구개발기관	도지원금의 10% (사용 연구개발비 기준)	정산완료 후 1개월 이내	영리기관에 한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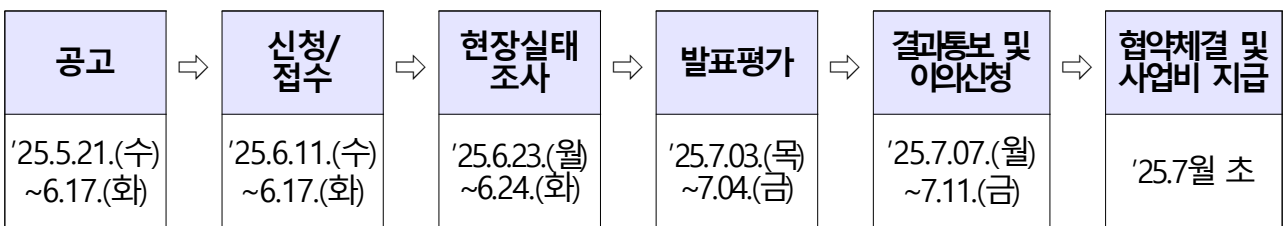
5. 유의사항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가속기장치 선도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 지침의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업 관리지침을 우선 적용
-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검토 후 결과에 따라 연구 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
-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 연구자의 월 인건비의 50% 이내, 총연구개발비(현물 제외)의 30% 이내에서 현금으로 계상 가능(단,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규채용인 력에 한하여 인정)
- 컨소시엄 과제는 사업비 구성시 지원금의 60% 이상 주관연구개발 기관 배정 필수

6. 지원 제외 대상

- 신청과제가 기개발·기지원 과제와의 차별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
 - * 단,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, 연구수행방식,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(기관)
 - * 연구개발기관, 연구개발기관의 장·연구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,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처리하며, 참여연구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
- 현재 연구책임자로서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
 - * 참여연구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, 참여연구자에서 제외 필요
 - ** 단, 기술개발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수행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1조(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)를 바탕으로 지원 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

7. 절차 및 일정



*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8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□ 신청기간

- 공고기간 : 2025. 05. 21.(수) ~ 2025. 06. 17.(화)
- 접수기간 : 2025. 06. 11.(수) 09:00 ~ 2025. 06. 17.(화) 18:00

□ 신청방법 (온라인 신청 후 오프라인 제출)

- 홈페이지 가입 및 로그인 → 기본사항 입력 → 신청서류 업로드
 - * 접수완료 후 수정할 경우 "제출하기"를 클릭한 후 "제출확인" 확인 필요(접수 마감일 기준으로,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접수취소)
- 온라인 접수처 : <http://contact.cbtp.or.kr>
 - * 온라인 접수 사용자 매뉴얼은 [온라인 접수처 홈페이지] 참조
 - * **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 제출 요망**
 - *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·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
 - *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50MB임을 유의
- 신청서(양식) 제공 :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등은 홈페이지, 온라인 접수처에서 다운로드 가능
- 신청서류 제출처 : 온라인 접수 시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
 - * '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' 참조하여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
 - * **온라인 신청 완료 이후 제출서류(원본 1부, 사본 7부) 오프라인 제출**

▶ 오프라인 접수처 : (28116) 충북 청주시 청원구 연구단지로 76,
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(본부관 210호) 이영훈 주임

9. 관련 법령

※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 적용

관련 규정

- ▶ 가속기장치 선도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(충청북도)
- ▶ 국가연구개발혁신법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▶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(중소벤처기업부)
- ▶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▶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- ▶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)

10. 접수 및 문의처

구분	소속	문의전화
주관부서	충청북도 방사광가속기추진과	043-220-3443
관리기관*	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	043-270-2294

* 사업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, 접수시스템 등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상단의 관리기관에 문의